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5호
----------	--------

제출년월일 2022. 8. .
제출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신설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항 반영

- 부시장 직속 담당관
 - 한시기구 이관 : 미래전략담당관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미래도시과(안 제10조의2)
 - 명칭변경 : 주민협치담당관 ⇨ 시민협치담당관(안 제4조)
- 행정국
 - 한시기구 이관 : 행정국 공공건축과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공공건축과(안 제10조의2)
- 환경녹지국
 - 신 설 : 하천과(안 제8조)
- 교통건설국
 - 부시장 직속 담당관 이관 및 명칭변경 : 안전총괄과 ⇨ 안전담당관 (안 제4조)
- 도시주택국
 - 신 설 : 종합허가과(안 제10조)
 - 폐 지 : 도시개발과(안 제10조)
- 보건소
 - 신 설 : 감염병관리과(안 제13조)

나.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반영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신설(안 제10조의2)
 - 신 설 : 스마트도시과(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08. 1. ~ 2022. 08. 11.(10일)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붙임)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나) 경 기 도 : 기획담당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주민협치담당관”을 “시민협치담당관”으로 한다.

5. 안전담당관은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사회 및 자연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회계과, 공공건축과”를 “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류, 남북교류”를 “교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후생, 인사 및”을 “후생노무, 인사, 채용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회계, 공공건축”을 “회계”로 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관광,”을 “관광진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 하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공원녹지”를 “공원녹지, 하천, 향만, 방재”로 한다.

7. 하천정책, 아라마리나 및 향만법, 소하천정비, 친수공간조성, 하천관리,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대중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6호) 중 “건설안전, 도로계획”을 “도로계획”으로 하고, 같

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의 교통, 건설, 도로, 철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 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를 “도시개발사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도시 지원” 을 “택지지구 지원 및 관리” 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관리, 건축허가” 를 “건축관리”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토지정보” 를 “토지정보, 허가사항” 으로 한다.

11. 허가행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미래도시과, 공공건축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전략사업 발굴 및 도입
2. 김포형 뉴딜정책사업 추진
3. 대곶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염하강 구간 철책제거 사업에 관한 사항
5. 군부대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공공건축물, 문화·예술·체육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 중 “보건행정과” 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축수산” 을 “축산, 해양수산”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소		행 정 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행정과장 박 영 상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조 길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 승 목(☎2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u>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u>을 둔다.</p> <p>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미래전략담당관은 주요 전략사업 발굴 및 도입, 전략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우수정책 검토 및 도입, 미래전략 4차산업, 한국형 뉴딜정책,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투자유치 정책 및 기획,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3. <u>주민협치담당관은 주민자치, 사회단체,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4. · 5. (생략)</p> <p>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u>회계과, 공공건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체육과</u>를 둔다.</p> <p>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 <u>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담당관</u>----- -----.</p> <p>② ----- --.</p> <p><삭제></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u>시민협치담당관</u>----- ----- -----</p> <p>5. <u>안전담당관은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사회 및 자연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u></p> <p>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 ----- <u>회계과</u>----- -----.</p> <p>② -----</p>

다.

1. (생략)
2. 국내·외 교류, 남북교류, 북한이 탈주민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복무, 후생,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8. 청사 및 공공건축물, 공공체육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행정, 회계, 공공건축, 정보통신, 민원, 체육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관광, 관광시설, 관광사업 등에 관한 사항
10. · 11. (생략)

제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교류-----

3. ----- 후생노무, 인사, 채용 및 교육, -----
4.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회계-----

제6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관광진흥, -----

10. · 11.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

----- 공원녹지과, 하천과-----.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하천정책, 아라마리나 및 항만법, 소하천정비, 친수공간조성, 하천관리,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환경정책, 기후정책, 에너지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철도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재난관리, 복구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및 민방위, 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건설행정, 건설안전, 도로계획 및 토지수용, 도로건설, 도로보상 등에 관한 사항

7. 8. (생략)

<신설>

9. 그 밖의 교통, 안전, 하천, 민방위, 건설, 도로, 철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
----- 공원 녹지, 하천, 항만, 방재-----

제9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
----- 대중교통과-----
-----.

②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3. ----- 도로계획 -----

4. 5.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6. 그 밖의 교통, 건설, 도로, 철도에 관한 사항

<삭제>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

-----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② -----
-----.

1. ~ 4. (생략)
5.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6. 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9. 건축관리, 건축허가,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10. (생략)

<신설>

11. 그 밖의 도시, 주택, 건축, 토지 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개발사업-----
--
6. 택지지구 지원 및 관리-----

7. · 8. (현행과 같음)
9. 건축관리-----

10. (현행과 같음)
11. 허가행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허가에 관한 사항
12. ----- 토지 정보, 허가사항-----

제10조의2(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미래도시과, 공공건축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전략사업 발굴 및 도입
2. 김포형 뉴딜정책사업 추진
3. 대곶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염하강 구간 철책제거 사업에 관한 사항
5. 군부대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공공건축물, 문화·예술·체육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p>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u>보건행정과</u>,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를 둔다.</p> <p>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축수산</u>, 가축방역 및 동물위생에 관한 사항 3. ~ 10. (생 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u>스마트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8. <u>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u> 9. <u>특화사업에 관한 사항</u> <p>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 <u>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u>-----</p> <p>제18조(소관사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축산, 해양수산</u>----- 3. ~ 10. (현행과 같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2. 1. 1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0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20.12.31.>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략담당관은 주요 전략사업 발굴 및 도입, 전략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우수정책 검토 및 도입, 미래전략 4차 산업, 한국형 뉴딜정책,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 과제 연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투자유치 정책 및 기획,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 기획담당관은 시정업무 기획 조정, 시의회 운영 지원, 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예산편성, 투자분석 및 집행심사, 법제 및 통계,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주민협치담당관은 주민자치, 사회단체,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회계과, 공공건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체

육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교류,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26.,2020.12.31.>
3. 공무원 복무, 후생,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회계결산, 계약관리, 복식부기,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6. 민원, 민원콜센터, 가족관계, 여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26.,2020.12.31.>
7.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8. 청사 및 공공건축물, 공공체육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9. 그 밖의 행정, 회계, 공공건축, 정보통신, 민원, 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1.12.31.>

제6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취업설계 및 직업상담 등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물가안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26.,2020.12.31.>
5. 기업지원, 해외시장 개척,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6.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7.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8. 문화, 예술, 문화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9. 관광, 관광시설, 관광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0.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1. 그 밖의 경제, 기업지원, 세정, 징수, 문화예술, 관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7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주민복지의 기획, 조사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노인복지 및 시설, 장애인복지 및 시설, 묘지, 장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여성정책 및 여성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6.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아동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7. 다문화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8. 보육정책 개발 및 추진, 보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9. 그 밖의 복지, 교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0.7.1.,2020.12.31.>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환경정책, 우수, 분뇨(가축포함), 환경안전, 환경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기후정책 및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환경관리, 환경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 2020.12.31.>
5. 공원조성, 도시녹화 및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6. 산림보호정책기능, 산림휴양 및 경제림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7. 그 밖의 환경정책, 기후정책, 에너지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철도과를 둔다. <개정 2019.7.26., 2020.7.1.,2020.12.31.>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교통정책, 교통시설, 주차시설, 주차질서,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대중교통 개선, 버스, 택시화물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재난관리, 복구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및 민방위, 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건설행정, 건설안전, 도로계획 및 토지수용, 도로건설, 도로보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7. 지역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8. 철도행정,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9. 그 밖의 교통, 안전, 하천, 민방위, 건설, 도로, 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6. 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7. 도시재생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8.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9. 건축관리, 건축허가,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 2020.12.31.>
10. 토지정보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1. 그 밖의 도시, 주택, 건축,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둔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9.7.26.>

제14조(소관사무) ① 소장 및 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대응 <개정 2020.12.31.>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바.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에 둔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 축수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7.26>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관리, 농지전용, 농업지원 및 유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축수산, 가축방역 및 동물위생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4.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의 보급
5. 농촌청소년 및 농업경영인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6. 지역농업의 개선지도
7.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대책의 기술지도
9. 농업인 및 농업관련인·단체에 대한 영농기술등의 교육훈련
10. 그 밖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0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사업소에 두는 과) ① 맑은물사업소에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0.7.1., 2021.7.30.>

② 클린도시사업소에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개정 2021.7.30.>

- 가.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7.30.>
- 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개정 2021.7.30.>
- 다.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 2021.7.30.>
- 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개정 2021.7.30.>
- 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개정 2021.7.30.>
- 바. 정수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운영 및 관리 <개정 2021.7.30.>
- 사. 원·정수 수질관리 및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개정 2021.7.30.>
- 아. 하수도 비관리청 사업승인·인허가 <개정 2021.7.30.>
- 자. 지하수 이용신고 등 지하수 관리 <개정 2021.7.30.>
- 차. 그 밖의 상·하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30.>
- 카. 삭제 <2021.7.30.>
- 타. 삭제 <2021.7.30.>
- 파. 삭제 <2021.7.30.>
- 하. 삭제 <2021.7.30.>
- 거. 삭제 <2021.7.30.>
- 너. 삭제 <2021.7.30.>

1의2. 클린도시사업소 <신설 2020.7.1.>

- 가. 청소 및 폐기물(가로청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9.>
- 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환경과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p>제8조1항 중 “환경녹지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환경녹지국에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하천과”로 한다.</p> <p>제8조제2항제7호의 “하천정책, 아라마리나 및 항만법, 소하천 정비, 친수공간조성, 하천관리,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p> <p>제8조제2항제7호 중 “그 밖의 환경정책, 기후정책, 에너지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2항제8호 “그 밖의 환경정책, 기후정책, 에너지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천, 항만, 방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다.</p>	<p>① 부서 명칭 변경 · 하천과 ⇒ 생태하천과</p> <p>② 팀의 부서 조정(신설) ·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 ⇒ 하천과 수질오염총량팀, 생태하천팀 신설</p> <p>③ 업무 조정 ·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을 ⇒ “하천과”에서 “안전담당관”으로 업무 조정</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1 자연 재난 재해와 방재에 관한 업무가 연계 필요

- 여름철 장마나 폭우 시 빠르게 수문을 조작하여 수위를 조절 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연 재난 재해와 방재업무는 한 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일원화 필요.
- 방재에 관한 사항은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측면이 강하며 주요 시설물인 배수 펌프장이나 배수문 등은 자연재해와 밀접한 관련됨

2 생태하천팀 신설, 수질오염총량팀 이전하여 생태하천과 신설

-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내 명품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생태하천팀 신설 필요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국비) 시행하기 위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이 필요에 따라 우리시 조직개편 필요.
-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하천 정책 필요
- 하천 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수질오염총량팀 이전
 - 모든 수질오염원이 하천(한강J, 굴포천A)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수질 오염총량팀 업무를 생태하천과에서 추진 필요.

◆ 조직개편 건의사항 ◆

조직개편(안)	건의(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안전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대재해팀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하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정책팀 하천관리팀 친수조성팀 방재시설팀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안전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대재해팀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안전점검팀 <li style="background-color: #d9e1f2;">방재시설팀 민방위팀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생태하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background-color: #ffff00;">생태하천팀 하천관리팀 친수조성팀 <li style="background-color: #ffff00;">수질오염총량팀 </div> </div>
<p>(주요개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시설 업무를 안전담당관으로 조정 ○ 수질오염총량팀 이전(환경과⇒하천과) ○ 생태하천팀 신설(하천과) 	

□ 타 시군 재난·하천·방재 업무 및 조직 비교 현황

(인구 : 2021. 12월 말 기준)

지자체	조직			인구수	비고
	업무명	조직	단위업무		
김포시 조작개편 (안)	재난	안전담당관 (부시장 직속)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사회 및 자연 재난 , 안전 점검, 민방위 에 관한 사항	504,267	
	방재	환경녹지국(하천과)	하천정책, 아라마리나 및 항만법, 소하천정비, 친수공간조성, 하천관리,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재난 (방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 중대재해예방)	풍수해보험, 가뭄, 지진, 강풍, 펌프장안전 관리, 방재단운영, 방재시설물 운영 , 한파, 지진 정밀안전점검	468,339	
	하천 (수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수질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원 , 폐수배출 시설, 수질오염원		
남양주시	재난 (방재)	시민안전관 (부시장 직속) (안전기획팀,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 배수펌프장운영팀...)	자연재난, 재난상황실운영, 풍수해보험, 자율방재단, 한파폭염, 배수펌프장운영, 저류지	740,856	
	하천 (수질)	환경국(환경정책과) 환경국(생태하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폐수배출시설, 하천수 수질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건강성회복 , 생태공원유지관리, 하천정원화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평택시	재난 (방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	재난상황실, 자연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운영관리 , 재난경보시설, 자율방재단, 저류지 관리	588,046	
	하천 (수질)	환경국(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하천 불법 행위, 하천 점용, 제방시설, 하천시설 준설, 맑은물종합대책, 하천 수질개선, 수질오염총량 , 폐수처리시설		
시흥시	재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안전총괄, 중대재해예방, 기동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자난 세부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자연재해저감, 승강기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풍수해 폭염방재장비, 재난상황실운영	543,553	
	하천	맑은물사업소(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 배수문공사, 친수공간		
부천시	재난	365안전센터(부시장 직속) (안전기획,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점검, 영상관제, 재난상황)	폭염 가뭄, 홍수, 재해영향평가, 자율방재단, 급경사지, 사회재난, CCTV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	829,846	
	하천	환경사업단(환경과) 환경사업단(생태하천과)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원 조사, 수경시설설치운영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 하천시설 유지보수, 수변공간조성		

○ 22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 현황

회계연도	부처명	회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국비(천원)(50%)
						18,397,000
2022	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	기타수질개선(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14,419,000
2022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타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1,840,000
2022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기타수질개선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2,138,000

○ 지원 비율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12차 개정(2020.5) 근거]

- 20년 이후 시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도의 집행보조율은 최소 기존 국고보조율 50%준용
- 2022년 국비 전체 총액: 약144억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예·결산, 사업관리]

(13차 개정)

2021. 10.



제3장 예·결산 및 사업 관리

I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1. 지원규모

가.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경관 보조)를 원칙으로 함

○ 시·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시·도의 지방보조율은 최소 기존 국고보조율 50%를 준용하는 것을 권고함(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진한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나.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지원을 기준으로 지방비 확보)

○ '87~'91(국고보조금), '92~'04(양여금), '05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13년부터 광역 광역계정 전환, '15년부터 지독 생활기반계정(구, 공동 지역개발계정)으로 전환, '19년부터 군특 지역자율계정으로 명칭 전환, '20년부터 시·도비 일반회계로 전환

2. 지원대상

가. 대상 지역 선정

○ (지원대상) 지방하천, 소하천, 호소, 설계천, 도심복개하천, 구하도, 공공수역 등의 하천구간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이·치수율 안정성이 확보된 하천 구간 또는 하천 정비될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이 주 목적인 하천(다만, 계획하복의 10% 확대 또는 1% 감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부서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 지방하천의 이·치수 기능 확보를 주 목적으로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수반되는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 포함)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 생태하천복원사업 착수이후 감사결과, 하천기본계획(변경) 등의 반영으로 이·치수 기능이 추가되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사업진척도, 복원사업 시급성, 예산 중목투자 기능성 등을 검토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 변경

·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오염원 퇴적물의 준설, 습지 조성, 수질정화식물 도입, 하상이과, 접촉산화시설 등)

· 하천변에 매설된 오·폐수 차집관로의 신설 및 개선

·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수변수질정화습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어류, 양서류 등 생물의 이동 유도 및 종횡단 통로 등)

· 하천 내 생물서식공간 확보(산란처, 은신처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하상 및 호안의 생태적 개선, 시설도입, 유도공사 등)

· 수질 개선 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하수재이용시설 등 관련 시설

○ 동일 하천구간(연접포함)에 대한 사업목적에 이·치수 안정성 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복합적인 경우, 이·치수 안정성 확보가 주목적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수질개선, 생태복원이 주목적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의 유형이 “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인지 “수질개선 및 생태적 복원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의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 사업 결정

※ 제2장(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제2절(사업타당성 검토)의 제1호 ‘사업 필요성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대상지역 선정

나. 하천기본계획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하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다. 지원 범위

- (수질개선 시설) 오염저축물 준설, 오·우수 분리, 하상여과시설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정화식물 도입, 오염물질의 침전·여과·분해·토양 흡착 등의 원리를 이용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 (수생태계 복원사업) 여울·소·수계 조성, 어도 조성, 보·낙차공 절저 및 개랑, 둔치부 식생복원 및 비오름 조성, 생태저류지 및 수생생물 서식지 조성, 수변 생태환경 및 생태벨트 조성, 샛강·도랑 및 들방 조성 등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 (환경생태유량 공급시설) 건전화된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신청
- (생태관찰·체험 시설) 수생태계를 관찰·체험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시설(진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인정(별표 1 참조)
- (토지매입)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지역의 토지매입 비용(건축물 및 지장물 보상 포함)
 - ※ 다만, 건축물·지장물 등의 이전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대체부지 매입비 등은 제외
- (설계 및 감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감리비용
- (기타 비용) 공사기간 중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비용
 - ※ 공사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확보

3. 우선지원 사업

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개선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통합·집중형 오염저류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하천
- '도랑유역 살리기',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 '공단 주변 오염수심 하천' 또는 '복개된 도심하천' 복원사업

나.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추진하는 사업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개인의 참여확인서, 협의체 운영 목회, 활동계획 등을 제시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하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계획한 사업

마. 전반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상태가 열악한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D(나쁨)-E(매우나쁨) 등급)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생태계 건강성> : 하천에 서식하는 수생생물(무척추동물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등을 평가하여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나쁨), E(매우 나쁨)의 5등급으로 구분. D(나쁨)에서 E(매우 나쁨)등급은 하천고반이 크게 진행되어 생물서식환경이 열악하고 생물학적 다양성과 건강성이 훼손된 상태

-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관리규칙)」(국립환경과학원)에 따름(등급구분: 별표 2 참조)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확인

- 바. 국가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수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복원이 필요한 하천
 - 환경부의 수질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지역이 필요한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하천
 - 총량관리 대상 지자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질개선이 필요한 하천
- 사. 계속사업은 당해년도에 시설 준공이 가능한 사업
 - 차기년도 이후 완료예정인 사업은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4. 지원제외 사업

- 가. 생태환경이 우수한 하천 또는 하천구간에 추진하는 사업
 - 수생태계 건강성이 A(매우 좋음) 등급인 하천
 - 하천구역과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이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연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하천 또는 하천구간
 - ※ 다만,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하여도 잠재적인 오염가능성, 기후적 원인으로 인한 유량 변화의 문제 발생 가능성, 외래종의 존재 혹은 침입가능성 등이 명확할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는 명확한 배경, 필요성, 예상효과 등에 대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그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또는 하천구간
 -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나. 수질 개선 또는 생태계 복원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사업
 - 지방하천의 이·치수기능 확보를 주 목적으로 종합적인 하천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

- 체육공원·주차장·사천거도로 등 부대시설(천수시설 등) 설치, 하도준설, 골재채취, 보·교량 신규설치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다.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절차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아래 항목중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다음 연도부터 향후 3년간 신규사업 미 반영)
 -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 후 편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시 기술검토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설계서 최종 심의 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미 준수 등 정상운영하지 않은 경우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 변경내용 공사 착공 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변경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한 이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
하천과 신설에 대한 부서 의견

① 검토 배경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 개정(‘22.1.1 시행) 추진
 -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 재해예방 측면에서 관리하는 행안부 소관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 시설(세천, 소교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여 물관리 이원화
 - * 지자체 소하천소규모 공공시설분야 조직 운영 방안 통보(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2902('22.07.13.)
-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친수환경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하천의 친수환경 조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필요
 - 재해예방사업(하천기본계획)과 및 공원녹지법과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

② 검토 내용

- 55개 하천(국가, 지방,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재난 재해 예방사업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예정인 우리시의 관점에서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계획 및 수립을 통한 재난 재해예방(소하천 및 펌프장) 사업 필요
- 37개 소하천 정비율 23%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시급
 -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증가 필요 (현재 2~3개소 → 변경 4~5개소)
 - * 최근 6월30일 일강우량 300mm 호우로 인한 대곶면 초원지리일원, 통진읍 귀전리 일원등 호우 침수피해 발생
 - 올해 6월 ~ 8월 일강우량 300mm 이상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 지역의 조기에방사업 추진 필요

○ 공약사항 이행 철저

- 민선8기 공약사항의 수변공원길(건고싶은 하천길)의 조성 적극 추진
- 우리시 여건에 맞는 도심지 하천의 건고 싶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4권역 수변공원길 조성등)

→ 하천법 및 공원녹지법의 상호보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하천행정의 일원화 추진

- 국가의 이원화 정책(국가 및 지방하천 환경부, 소하천등 행안부)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음
-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적극적인 재해예방과 시민이 원하는 건고 싶은 하천길 조성

③ 건의 사항

- 하천과는 하천법(제1조) 및 소하천법(제1조) 목적에 따라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및 건고 싶은 하천 조성을 위한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전담팀이 필요하며,
 - 한강 하구에 위치한 우리시 여건 및 저조한 하천정비율을 고려하여 하천업무의 치수 및 재해예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
 - 재해예방사업(행정안전부) 및 소하천사업(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의 상위기관 성격에 맞게 건설사업으로 하천을 이용한 수변도시 이미지 달성을 위해
- ⇒ **중앙-지방간 조직 및 업무를 고려하고 치수 및 시민친화적인 하천기능을 실현하고 공약사항의 적극이행을 이루기 위해 건설교통국으로 조직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 (향후) 방재시설팀은 하천과 분리된 재난을 총괄하는 과로 이관이 필요함

참고1

도내 향후 5년간 하천공사 집행 예정 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순위	합계	516,210	95,063	103,872	122,515	109,038	85,722
1	수원시	83,902	5,029	16,060	24,986	24,986	12,841
2	김포시	61,489	3,624	11,065	21,600	12,300	12,900
3	의왕시	32,812	2,866	2,494	15,400	11,652	400
4	연천군	28,825	3,728	7,028	5,583	6,760	5,726
5	용인시	25,998	6,598	4,850	4,850	4,850	4,850
6	의정부시	21,467	5,736	4,245	3,319	3,848	4,319
7	남양주시	21,438	3,306	4,533	4,533	4,533	4,533
8	오산시	20,976	14,183	1,623	1,590	1,790	1,790
9	광명시	20,318	2,450	4,595	4,494	4,395	4,384
10	이천시	19,813	7,741	3,543	2,843	2,843	2,843
11	성남시	18,723	6,309	4,344	4,890	1,590	1,590
12	화성시	16,296	3,556	3,170	3,190	3,190	3,190
13	평택시	16,221	2,235	7,167	2,273	2,273	2,273
14	가평군	14,358	2,698	3,440	2,690	2,740	2,790
15	여주시	13,944	2,813	3,280	2,617	2,617	2,617
16	파주시	12,531	3,734	3,307	1,870	1,805	1,815
17	시흥시	12,068	3,031	2,197	2,180	2,280	2,380
18	고양시	11,662	2,085	2,225	2,342	2,447	2,563
19	광주시	11,127	1,510	1,967	2,209	2,729	2,712
20	안성시	10,150	3,524	4,244	794	794	794
21	양주시	8,400	1,680	1,680	1,680	1,680	1,680
22	하남시	6,726	966	1,440	1,440	1,440	1,440
23	동두천시	6,270	1,312	1,181	1,204	1,369	1,204
24	안양시	5,946	1,616	1,154	993	1,039	1,144
25	과천시	3,215	643	643	643	643	643
26	구리시	2,730	537	587	537	537	532
27	안산시	2,421	476	487	486	486	486
28	포천시	2,286	346	452	496	496	496
29	군포시	2,035	403	423	403	403	403
30	양평군	1,318	225	271	247	324	251
31	부천시	745	103	177	133	199	133

* 경기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제9조, 경기도 2022.03.)

참고2

최근 5년간 하천관리팀 예산현황

□ 최근 5년간 하천관리팀 예산현황

○ 하천관리팀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25,239	26,144	41,473	35,887	35,40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200	9,732	16,900	10,000	12,000	
소하천정비사업	8,929	5,194	7,688	14,100	8,000	
지방하천 보상	6,202	9,470	14,632	9,908	13,526	
유지관리사업	908	1,748	2,253	1,879	1,875	

※ 2022년 예산 : 2회추경 확보예정 5,000백만원 포함

○ 세부예산내역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봉성	2,000	7,207	15,400	10,000	12,000	재해예방 사업
	나진	7,200	2,525	1,500			
소하천 정비사업	학현천	2,400	682				
	구래동천	3,800	4,172	1,488	1,800		
	원산천	384	340	2,000	2,800	4,000	
	셋돌천			4,200	9,500	4,000	
	종합계획	2,345					
지방하천 보상	봉성포천	1,184	420	269	11	1,326	
	계 양 천	1,433	2,341	6,782	2,730	5,000	
	나진포천	1,000	5,647	4,636	3,726	5,000	
	가마지천	2,585	1,062	2,945	3,441	2,200	
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	165	255	110	227	86	
	지방하천	130	380	351	302	332	
		50	155	520	80	160	
	소하천	420	800	1,120	1,100	1,100	
	명예감시	14	24	10	10	18	
	하살추	46	45	47	47	49	
	불법감시	33	43	45	68	85	
	하천하구	50	46	50	45	45	

참고3

우리시 하천관리현황

□ 개요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55	3	15	37
연 장	182.92km	50.43km	68.29km	64.69km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하천명	위치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km ²)	개수율 (%)
	기점	종점			
국가하천	계	3	50.43		
한 강	고촌	하성	44.10		100
아 라 천	고촌	고촌	2.7		100
굴 포 천	고촌 전호	한강합류	3.63	5.75	93
지방하천	계	15	68.29		
계 양 천	김포 풍무	한강합류	8.7	4.5	85
석 모 천	양촌 누산	봉성포천	3.21	8.91	22
봉성포천	양촌 구래	한강 합류	9.00	58.43	55
국 사 천	하성 석탄		3.55	5.85	33
양 택 천	하성 양택		2.93	7.49	7
개 화 천	월곶 개곡		3.30	9.76	3
나진포천	김포 감정	계양천 합류	3.06	5.65	100
거물대천	통진 가현	봉성포천	4.67	8.52	0
가마지천	양촌 마산		3.90	6.79	54
서 암 천	통진 고정		6.88	15.56	3
수 참 천	하성 원산		3.36	4.51	6
포 내 천	통진 응정	서해 합류	8.11	22.41	11
석 정 천	대곶 석정		2.10	4.39	1
검 단 천	양촌 대포		4.3	23	13
대 포 천	양촌 학운	검단천합류	1.22	3.33	6

□ 소하천

수계	소하천명	행정구역		연장 (km)	유역면적 (km ²)	개수율 (%)
		시 점	종 점			
계	37			64.75	84.83	23.21
굴포천	신곡천	김포 고촌 신곡 796-1	김포 고촌굴포천합류점	2.78	3.13	0
계양천	관청천	김포 고촌 향산 899-1	김포 걸포 2-271	4.33	3.14	0
봉성포천	양곡천	김포 양촌 구래 203-1	김포 양촌 양곡 330-14	1.18	2.39	100
	마송천	김포 통진 마송 94-4	김포 통진 가현 782-1	1.06	1.70	100
	도사천	김포 통진 도사 968-138	김포 양촌 흥신 585	1.79	1.71	0
	지난천	김포 양촌 석모 1128	김포 양촌 석모 706-16	0.84	1.15	0
포내천	터골천	김포 통진 용정 54-7	김포 통진 용정 129-3	1.46	2.49	25.3
	점동천	김포 월곶 갈산 279-1	김포 월곶 갈산 352	1.02	0.53	59.1
	고막천	김포 월곶 고막 213	김포 월곶 포내 33-2	2.65	3.78	42.5
	수현천	김포 월곶 포내 115-5	김포 월곶 포내 82-6	1.14	1.77	51.3
검단천	학현천	김포 양촌 학운 250-2	김포 양촌 학운 508	2.44	2.07	100
	고음달천	김포 양촌 학운 92-1	검단천 합류점	2.08	2.12	39.2
개화천	울안천	김포 월곶 조강 321	김포 월곶 조강 226-80	2.21	2.33	0
한강	용현천	김포 월곶 용강 337	김포 월곶 용강 14-8	2.26	4.43	0
	셋돌천	김포 고촌 풍곡 278-3	김포 고촌 향산1평프장	3.15	2.77	45.1
	하동천	김포 양촌 누산 1068	김포 하성 봉성 640-10	2.18	2.10	0
	돌방구지천	김포 고촌 신곡 산36-4	김포 고촌 신곡 45-2	0.54	0.53	0
계양천	보수개천	김포 걸포 4-153	김포 걸포 4-119	0.64	0.22	26.0
국사천	양지천	김포 하성 양택 448	김포 하성 석탄 50	2.12	2.55	0
서해	뇌머리천	김포 대곶 대능 658	김포 양촌 학운 1851	4.12	7.92	25.3
	호동천	김포 대곶 을생 646	김포 대곶 약암 437-171	3.70	7.12	0
	약암천	김포 대곶 약암 291	김포 대곶 약암 570	0.61	0.35	0
봉성포천	구래동천	김포 양촌 구래 668-12	김포 양촌 구래 821-8	1.83	1.56	100
	유현천	김포 양촌 유현 425-2	김포 양촌 유현 47-1	0.86	0.76	6.8
	모정천	김포 대곶 을생 242-2	김포 대곶 초원지 270	1.98	2.27	39.9
	불당골천	김포 통진 고정 397-3	김포 통진 고정 658	0.63	0.55	63.8
	정자천	김포 통진 귀전 912	김포 통진 고정 913	0.82	2.10	0
	신절루천	김포 통진 귀전 869	김포 통진 귀전 913	1.14	0.69	0
	옥개울천	김포 통진 서암 1025	김포 통진 서암 1106	1.57	1.53	0
	원산천	김포 하성 원산 17-9	김포 통진 동을산리 200-2	2.55	2.09	40
담터천	김포 통진 서암 690-1	김포 통진 서암 604-1	1.24	1.92	0	
나진포천	고창천	김포 장기 728-1	김포 장기 65-1	1.11	4.45	100
양택천	가금천	김포 하성 가금 166-1	김포 하성 가금 69-1	2.43	2.99	0
석정천	능동천	김포 월곶 고양 477	김포 대곶 석정 990	0.68	0.86	0
	용에머리천	김포 월곶 고양 145	김포 월곶 고양 776	0.87	1.76	0
포내천	절골천	김포 통진 용정 300	김포 통진 용정 185-2	0.77	1.77	0
	안질골천	김포 월곶 갈산 67-1	김포 월곶 갈산 357	1.97	3.23	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과
- 주 소 :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25
- 전 화 번 호 : 5186-4150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p>제13조 중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보건과를 <u>북부보건센터</u>로 변경 ○ 북부보건과(보건관리, 건강생활, 방문보건, 치매관리팀)는 현재 임대청사에서 2022.11월 통진읍행정복합청사 준공으로 이전 예정임. ○ 북부보건과 이전 청사는 단일청사로 면적이 지상4층 3,772.8㎡(1,141평) 규모임. ○ 2022.9월 조직개편에 따라 진료검진팀이 신설되어 진료기능, 체증명발급(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등), 노인 및 장애인 재활운동센터, 노인체력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물리치료실, 대사증후군 검사실 등이 신설 운영될 예정임. ○ 또한 2023년 조직개편시 인원증원 등으로 구강보건, 영양사업, 모자보건, 금연상담, 영유아프로그램 등 북부5개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소 기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민선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 김포시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참고 ○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북부보건과는 종합적인 보건행정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으로 주로 일반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과(課)로 주민에게 혼동 등을 줄 수 있어 <u>북부보건센터</u>(노인 및 장애인 재활운동센터, 노인체력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센터가 3개 포함됨)로 함이 타당함. 	